내부거래위원회

I. 권한

내부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50억 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하며,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기타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안건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거래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 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구성

1.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해임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 만료된 위원이 있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이후 새로이 구성합니다.
3.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5. 내부거래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내부거래에 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7.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및/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III.자료의 보존

다른 계열사와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 등 회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해당 계약의 효력이 최종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합니다.